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 범위는?

**Q<sup>1</sup>** 화관법 제33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1년미만 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 또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당 사업장 건설하도급 종사자중 1년미만근로자, 일용직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되어있으며 일 출입인원이 약 2000명에 이릅니다. 현실적으로 이 인원을 다 교육시키는 것은 무리인것으로 사료되어 교육대상자의 실질적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종사자 교육 목적은 화학사고 대비·대응 및 취급 방법 등을 숙지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속하는 취급 담당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 2시간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종사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1년 미만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또한 종사자 교육(2시간/매년)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종사자 교육(2시간/매년)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교육교재는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안전원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온라인 교육이 진행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e.go.kr)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온라인 교육이 진행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신고)된 특정대기오염물질이라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의 측정은?

**Q<sup>2</sup>**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특정유해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항목 있습니다.(예:베릴륨, 사염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오염물질을 미측정 시 어떠한 법적제재가 있으며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항목을 측정하여 높은 데이터가 나왔을 시 어떠한 기준으로 법적 제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사염화탄소 40ppm) 측정주기에 맞게 필수적 또는 측정주기를 무시하고 참고적으로 측정을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문의내용은 “자가측정대상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의한 자가측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된 특정대기오염물질이라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별표에 의한 자가측정 의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 여건에 맞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 법령

정보센터(대기환경보전법: law.go.kr), 환경부 전자도서관(배출시설 해설집: library.m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용수 공급 및 유량계설치는?

**Q<sup>3</sup>** 당사는 토사석광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의 사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려합니다. 물리적처리(유량조정조, 침전조)를 통해 순환재이용하고, 운영 중 소모 증발에 따른 1일 3.2톤 정도의 용수를 보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변에 지하수, 상수도가 없어, 용수공급 방법을 살수차로 이송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용수공급을 살수차로도 가능한지, 가능 할 경우 용수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 설치가 곤란하고, 일지 등의 기록 방법 또한 곤란하여 문의드립니다.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4)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 및 종류에서 용수적산유량계 설치 면제 사항은 없어 용수 사용량 확인을 위해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용수저장탱크에 용수를 탱크로리로 이송 후 용수적산유량계 부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장폐기물 소각재(바닥재) 재활용 문의

**Q<sup>4</sup>**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등에 따른 소각재(바닥재)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바닥재) 성분검사결과 지정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그 소각재(바닥재)를 재활용시 신고 및 허가가 가능한지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바닥재)를 요업제품(벽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허가 신고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35조 가항목 및 나항목(용출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나요?

**A**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따라야 하는 바 [같은 표]의 제3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요업제품(벽돌)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동 폐기물을 배출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동 폐기물에 대한 처리 능력이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디스포저) 허용여부?

**Q<sup>5</sup>** 국내 판매중인(제조·수입 포함)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설치 사용 가능 여부(현재 혹은 예정)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허가를 득한 제품 목록에 있는 모든 제품이 현재 설치 사용 할 수 있는지. 2. 현재 안전인증(KC)을 득한 제품 의 일반 소비자 판매와 설치를 하려는데 적법한것인지. 3. 이미 허용된 20%미만 배출감량 분쇄기는 계속 판매 가능한지요?

**A** 우선 분쇄된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20% 미만 배출 등 인증조건을 만족하여 제품인증과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증이후에도 인증조건을 유지하는 분쇄기는 일반가정에 한해 판매·사용할 수 있습니다(음식점 등 사용불가) 다만, 인증이후 인증당시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음식물찌꺼기를 전량(20%이상)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의 인증표시 또한 허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 또는 대리점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인증유무(제품 및 전기안전인증)와 더불어 유통하는 제품이 인증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시 불법제품일 경우 원상회복, 계약금 환불 등에 대한 책임있는 자와 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분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증 제품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게재)